

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(제19조제5항 관련)

1.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(地下水涵養源)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
 - 가.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
 - 나.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
2.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
 - 가.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
 - 나. 대수층의 수질이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지역
3.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
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
4.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
 - 가.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
 - 나. 지하수의 개발·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
 - 다. 지하수의 개발·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
 - 라. 지하수의 개발·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·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하는 지역
5.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
 - 가. 인체유해오염시설이 있는 지역
 - 나. 오염유발시설이 밀집한 지역
 - 다. 폐광 및 폐기물처리 지역
 - 라.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지역
 - 마.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가 있는 지역
6. 해안염수침입 지역
 - 가.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대용량의 지하수시설이 있는 지역
 - 나. 대수층의 수리 특성상 투수성(透水性)이 높아 바닷물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
7.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
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